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상훈 · 정동만
김성원 · 김위상 · 구자근
김미애 · 최보운 · 이현승
박덕흠 · 윤상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·진열·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,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,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·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.

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

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,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(안 제22조 및 제33조).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농약등”을 “제1항의 농약등”으로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·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3조제1호의5 중 “제22조를”을 “제22조제1항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6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허위광고 등의 금지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허위광고 등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·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.</u>
<u>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	<u>③ 제1항의 농약등</u> ----- ----- -----.
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3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의4. (생 략)	1. ~ 1의4. (현행과 같음)
1의5.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<u><신 설></u>	1의5. 제22조제1항을 ----- -----
2. · 3. (생 략)	<u>1의6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</u> 2. · 3. (현행과 같음)